

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국가보훈
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12 월 8 일

여 수 시 장

2025.12.8



여수시 조례 제2263호

붙임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, 제4호,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

여 지급하고, 이를 승계할 수 없다.

④ 「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지급결정 등)”을 “(지급 방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제1호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~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 [개정안]

보훈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

신고인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
	주소	(전화번호)		

변경사항

예금계좌	금융기관명		예금주성명	
	계좌번호			

「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여수시장 귀하

※ 구비서류 :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

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(입금계좌확인정보) 제공 동의서

-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(또는 직원)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(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)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0조(명예수당 등 지급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11조(지급대상) ①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. <u>다만,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4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제4조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</u>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0조(명예수당 등 지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제11조(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1.----- ----- <u>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</u>----- -----</p>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

3. 삭 제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
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

6. (생략)

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

8. ~ 10. (생략)

<신 설>

② (생략)

③ 「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6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8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, 이를 승계할 수 없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삭 제>

례」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. [본조 신설 2016. 12. 30.]

<신 설>

제13조(지급결정 등) ①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5조(변경신청)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소를 변경한 경우

2. 3. (생 략)

④ 「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제13조(지급 방법 등) 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변경신청) -----

-----.

<삭 제>

2. 3. (현행과 같음)